

##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제정 2022.05.01

### I. 논문작성요령

1.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국문초록(주제어 포함), 논문차례,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하며, “[참조] 투고문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2.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I., 1., 1), (1), 가) (가)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국문논문은 500단어 내외의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 초록의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해당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필자명은 영문(English)으로 병기한다.
5. 외국어논문은 500단어 내외의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Korean)으로 표기해야 한다.
6.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7.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국내문헌의 경우】

- 국내 단행본 : 저자,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34면(또는 쪽).

- 국문 논문: 필자, “논문명”, 간행물 명칭, 출판사, 발행연월, 23면(또는 쪽).
- 편집서: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23면(또는 쪽).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 예) 홍길동, 위의 책(주 5) 32면(또는 쪽).
  - 예) 홍길동, 위의 논문(주 7), 47면(또는 쪽).
- 바로 직전의 책이나 논문을 재인용 하는 경우,
  - 예)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23면(또는 쪽).
- 판례의 인용: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 예) 대법원 1996.12.5. 선고 94누15783 판결 또는 대판 1996.12.5. 94누15783.
- 법문의 인용은 「」로 표시하고, 직접인용은 “”, 간접인용은 ‘ ’으로 한다.

### [일본 문헌]

-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 일본의 年號(昭和, 平成 등)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
- 저서: 著者名『書名』(發行所, 版表示, 發行年) ○頁(또는 면, 쪽)
  - 예) 四宮和夫『民法總則』(弘文堂, 第4版, 1986) 125頁
- 논문: 執筆著者名「論文名」雜誌名○卷○號(發行年) ○頁(또는 면, 쪽)
  - 예) 末弘嚴太郎「物權的請求權理論の再檢討」法時11卷5號(1939) 1頁以下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 필자, 위의 책(주 28) 123頁(또는 면, 쪽)
  - 필자, 위의 논문(주 35) 123頁(또는 면, 쪽)

### [영미 문헌]

- 단행본: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pp. 1-13, 면 또는 쪽.
  - 예) Que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

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Vol. 1, pp. 3-65.

- 논문: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연월, pp. 1-13, 면 또는 쪽.

예) Daphna Hacker, “Strategic Compliance in the Shadow of Transnational Anti-Trafficking Law”,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28, 2022, pp.13-15.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pp. 1-13, 면 또는 쪽.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 Smolla, 위의 책(주 13), pp.135-37 (면 또는 쪽)

예) Rose, 위의 논문(주 38), p.132 (면 또는 쪽)

-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8.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가. 국내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 출판사,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 나. 국외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 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출판사,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 II. 논문투고요령

1. 입법학센터 편집위원회 이메일을 통한 투고
2. 투고시에는 집필자의 소속기관, 성명의 영문 표기 및 논문제목의 영문표기를 원고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내실 곳 : (우 21044)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306호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전화/팩스 : 032) 540-1221 / 540-1358  
E-mail : clsli.edit@gmail.com  
<https://www.legislation21.org/>